◉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0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htahn37@korea.kr
 - 팩스: 044-202-3927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2,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 5.2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급인의 작업화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 1) 사업주와 달리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발생
- 2) 도급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9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20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1. 공고 사유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고